

『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노사 관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무국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위탁운영 근거 신설(안 제9조제1항)
-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3,000여개 업체와 9만여명의 근로자가 있는 구미시 환경에서는 노사관련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나, 정책과 집행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노사민정 간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조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